Jisung Horizon Newsletter

February 2009 Vol.2. No.2

01 이슈진단

■ 자본시장법 시행에 즈음하여 (이행규 변호사)

03 법률칼럼

• 2009년 10월엔 영국에 대법원이 생긴다 (박용대 변호사)

06 이달의 팀 소개

■ 지평지성 공정거래팀

09 이달의 팀 칼럼

■ 경제위기(Economic Crisis)와 공정거래(Fair Trade) (박형삼 변호사)

13 열려라 중국

■ 중국 증치세조례 (원성철 중국 변호사)

14 생생 러시아

러시아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개괄적 검토(2)
(최수진 변호사)

15 Vietnam LIVE!

■ 베트남 현지기업 파산절차에 대한 소고 (김주현 변호사JS Horizon Vietnam Hanoi 지사장)

18 주목! 이 판례

소위 '알박기'행위와 부당이득죄(대법원 2009년
1월 15일 선고 2008도8577 판결)

24 최신법령

- 증권거래법 일부 규정, 상법에 편입
- 자통법 제정 이후,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개정사항 반영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

25 지평지성 소식

- 법무법인 지평지성, 베트남 현지법인 하노이사무소 설립
- 지평지성, 현대종합상사 매각 관련 법률자문사로 선정
- 지평지성, 모스크바 투자진흥청과 MOU 체결
- 지평지성, 진도에프앤 매각 자문업무 수행
- 지평지성, 대주세무법인 업무협약 체결
- 지평지성, 강북 본사를 중심으로 사무실 재배치 및 이전 완료

34 영입인사

- 홍진경 미국변호사
- Nguyen Thi Thoa 베트남 변호사
- Nguyen Trong Hiep 베트남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 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 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 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 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 기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 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이슈진단)

자본시장법 시행에 즈음하여



이행규 변호사

2009년 2월 4일, 지난 주 수요일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해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전 세계적 경기 침체의 가속화로 글로벌 IB 육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법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안이 봇물을 이루었고 법 시행시기를 늦추어야한다는 개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키코 사태로 인해 기존에 일률적으로 전문투자자로 분류되었던 상장법인의 경우 파생상품판매에 있어서는 일반투자자로 분류하는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주의 규율체제(negative system)로 변경하여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양한 장내외 파생상품이 개발될 것을 의도한 것인데 전 세계적 금융위기의 주범이 이러한 파생상품으로 지목되면서 과연 이러한 다양한 파생상품의 출현이 우리의 금융시스템상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또 다른 주요한 변화는 금융투자업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어 금융투자 업으로 분류되는 범위 내에서는 전면적으로 겸업이 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투자업은 과거와 달리 동일한 기능별로 동일한 규율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증권업에 해당하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과거의 자산운용업)을 겸영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입법 과정에서 이해상충에 대한 우려로 상당한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이해상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신의성실의무 및 충실의무 부과, 정보차단벽 설치 및 임원겸직 금지, 각종 행위규제 부과, 이해상충 관리체계 구축 및 운 용의무 부과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금융투자업자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그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목표나 수익 창출에 집착할 경우 업계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가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신설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을 권유, 판매하기에 앞서 (i)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확인하여야 하고, (ii)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후 일반투자자의 서면확인을 받아야 하며, (iii) 해당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안 되고, (iv)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소위 '고객성향파악원칙', '적합성의 원칙'). 또한, 거짓이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이 금지되고, 투자권유의 요청을받지 아니하고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unsolicited call)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자본시장법하에서의 투자권유를 성실히 준수할 경우 과거에 10분이면 끝낼 수 있었던 펀드 판매도 1시간씩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번거로움은 모두가 조금씩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글로벌 IB가 육성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을 제정할 당시 모델로 삼았고 또 참고하였던 선진 금융시장이 많은 부분 실패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본시장법의 시행을 위해 준비해 온 지난 1년 반 동안의 기간을 무시하고 대안 없이 그 시행을 늦추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법은 시행되었고, 자본시장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이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수 있게 할지는 우리 손에 달렸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금융시장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직시하고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세계 금융질서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입니다.

(법률칼럼)

2009년 10월엔 영국에 대법원이 생긴다



박용대 변호사

영국의 최고법원과 대법원

대한민국의 법원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1개의 대법원, 5개의 고등법원, 18개의 지방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정점에 있는 최고법원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의 법원조직은 어떠할까요? 미국과 독일의 최고법원이 각 연방대법원이라는 사실은 아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정치, 사법제도가 먼저 시작되고 발달된 영국(엄밀히 말하면 잉글랜드와 웨일즈임.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독립된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음)은 어떨까요? 영국에는 현재 대법원이 있을까요?

영국은 2005년 헌정개혁법(The 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이 통과되면서 올해인 2009년 10월이 되어서야 의회권력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대법원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영국은 지금까지 대법원이 없었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영국은 의회권력과 독립된 대법원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최고법원의 역할은 상원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영국은 현재까지 어떤 사법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왜 2005년에 이르러 헌정개혁법을 통해 사법조직의 개혁을 하려고 한 것일까요?

위 개혁법이 통과되기 전의 영국 최고법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10월 "The Supreme Court"로 불리게 될 대법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영국의 최고법원의 역할은 상원(또는 귀족원, "The House of Lords")이 가지고 있습니다. 12명의 귀족법관("Law Lords")이 상원의 이름으로 항소법원을 거쳐 제기된 상소에 관하여 사법적인 최종결정권을 행사합니다. 영국법의 근간인 case law를 만들어 왔고, 만들고 있는 주요 사법조직이의회의 한 기관인 상원이었던 셈입니다.

개혁을 요구받은 로드 챈서러의 권한

한편 위 헌정개혁법이 통과되면서 곧바로 권한이 축소된 직위가 로드 챈서러("Lord Chancellor")입니다. 로드 챈서러는 위 헌정개혁법이 만들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직위입니다. 로드 챈서러는 최근까지 무려 1,400년 이상이나 지속된 직위로 영국의 법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기관이었습니다. 로드 챈서러의 권한은 입법, 사법, 집행부를 망라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집행부 또는 정치적 지위에 있어, 로드 챈서러는 영국 정부내각의 구성원으로, 우리나라 법무부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관입니다. 그는 명목상으로는 영국의 여왕(또는 왕)에의해 임명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상에 의하여 지명되며 정부 내각의 다른 구성원처럼 선거에 패배하여 정권이 바뀌는 경우는 물론 수상이 교체되는 경우에도 자신을 지명한 수상과 그 운명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법 영역에서의 역할을 살펴보면, 그는 모든 법원 조직의 수장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위에 바탕을 두고 그는 모든 법원 조직의 주요 법관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최고법원이었던 상원의 귀족 법관 중 1명이었고, 추밀원("Privy Council")의 법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졌습니다. 나아가 입법 영역에서의 역할을 보면, 그는 상원의 구성원의 역할을 넘어서 상원의장의 지위를 가졌습니다. 로드 챈서러는 개혁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법과 관련된 영역에서 실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직위라 하겠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해서는 권력분립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프랑스정치사상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이 출간된 때가 1748년입니다. 위 책이 유럽에 큰반향을 일으킨 것은 물론 미국헌법의 초석이 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8세기를 훌쩍 뛰어넘어 2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권력분립의 원칙과 양립하기 어려운 즉입법, 사법, 집행권력을 두루 가지고 있는 위 직위의 권한이 정치제도가 발달하였다고 하는 영국에 최근까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존치시켜 온 로드 챈서러의막강한 권한은 21세기를 맞아 다시 거센 개혁의 비판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모든 법관의 임명권을 가진 로드 챈서러가 정당을 위한 정치적 모금행위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중매체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 법관 임명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법률가들로부터상당한 기부를 받은 것도 포함하여 - 개혁에 대한 요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외면하기 어려워 헌정개혁법을 통해 로드 챈서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법원을 의회권력으로부터 분립시키며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을 설립하는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법원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법관 임명에 관한 기구와 절차에 관한 개혁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로드 챈서러의 과거 권한 중 모든 법원의 수장이 되는 지위, 최고 법원의 법관이 되는 지위, 법관의 임명절차에 중심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지위, 자동적으로 상원의 의장 이 되는 권한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집행부 내각의 구성원으로서 법무부에 해당하 는 부서의 장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질 뿐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진정한 보호를 위해서는 이렇게 바뀌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오히려 상당히 때가 늦은 개혁이라고 할 것입니다.

개혁과 전통

정치, 경제, 사법제도 등 많은 제도들은 그 나라가 경험해 온 역사와 그 사회의 결과물들 입니다. 동일한 원칙에 기반을 두었다 하더라도 각 제도들이 구현되는 방법은 그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 호 및 그 신장을 꾀할 수 없어 수명을 다한 제도, 심지어 이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누르는 제도는 마땅히 사라지고,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는 새 제도가 자라나야 건강한 사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만들어졌던 제도들은 비록 그 수명을 다하였다고 하 더라도 "기득권"이라는 완고한 자기방어벽을 함께 쌓아 올리면서 세월을 보낸 터라 "전 통"이나 다른 명분 뒤에 숨어 자기생존을 계속 구가하려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진정한 개혁이 어려운가 봅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하면 도무지 장점이라고는 찾 아보기 힘든 영국의 "로드 챈서러"라는 직위가 21세기 초까지 그 막강한 권한을 내놓지 않은 것도 그 예라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참고하더라도 우리에겐 사라지거나 고쳐야 할 제도에 대한 개혁과 아름다운 전통으로 보호해야 할 제도를 지혜롭게 구별하는 혜안 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상원을 대신하여 의회권력과 독립된 대법원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영국 사법체계 에 있어 1400년만의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곳 법률가들도 그 변화가 사법 영역을 포함하여 사회 곳곳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 습니다. 늦었다는 느낌을 지우긴 어렵지만 그래도 그들의 진일보한 전진에 박수를 보내며 그들의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지구촌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도리일 것입니다.

※박용대 변호사는 현재 영국에 있는 'King's College London'에서 연수중입니다. Js Horizon

(이달의 팀소개)

지평지성 공정거래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정거래팀은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고도화에 따른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독과점,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과 독점규제법규의 적용이 더욱 증대되는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각종 공정거래 사건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저희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한 사전적 자문업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판단계에서의 대응,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각 업무단계에 맞는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투입함으로써전문적이면서도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자부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정거래팀은 자문업무에 있어서 김상준 변호사, 박선희 변호사, 박형삼 변호사 등이, 소송업무에 있어서는 조용환 대표변호사, 박영주 변호사, 김지홍 변호사, 조병규 변호사 등이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기업의 인수·합병·사업양수도·설립 등 기업결합과 관련한 경쟁제한성 및 효율성 검토·분석, 기업결합신고 대리
-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조사 대응 및 카르텔 자진신고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관련 자문
-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및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등 대리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등 그룹 지배구조 개편 및 지주회사 운영 관련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대응 및 심판절차 대리
-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에 관한 자문
- 프랜차이즈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관련 자문
- 불공정 약관 관련 분쟁에 관한 자문
-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관련 자문
- 부당한 표시·광고 관련 자문
- 전자상거래 및 할부거래 관련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과 관련한 이행사항의 협의 및 이의신청
-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각종 과징금 및 시정조치 취소소송
- 하도급거래분쟁에 관한 소송
- 불법다단계판매행위 관련 형사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주요 실적

- 해외 복사용지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시내전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학생복 제조업체 및 학생복발전협의회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건설기계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
- 시멘트 제조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련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
- 하이트맥주의 진로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 건
- 동양제철화학의 CCK 인수 관련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
- 신세계의 월마트 인수 관련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
- 이랜드아울렛의 한국까르푸 인수 관련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
- 대우기업집단, 동양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건
- 포스코 및 포스틸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건
-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구 동원금융지주회사)의 지주회사 설립 관련 자문
- 게임업체들의 약관심사청구 건
- 엔터테인먼트 회사 소속 연예인의 약관심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신고 건
- 인기 연예인 전속계약 관련 약관심사 건
- 고속도로정보통신 민영화 관련 한국도로공사 과징금 부과 불복 소송
- S사의 부당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건
- S사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해 건
- L사의 기업결합신고 건 등 다수
- P사의 하도급법 위반 건 등 다수

[담당변호사]



조용환 대표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박영주 변호사



박선희 변호사



김지홍 변호사



박형삼 변호사



조병규 변호사

(이달의 팀 칼럼)

경제위기(Economic Crisis)와 공정거래(Fair Trade)



박형삼 변호사

지난해 9월 1일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끝이 과연 어디까지가 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도 지난 2008년 4분기에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올 상반기에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종전 2%에서 -3.7%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 여건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12월 18일에 '2009년도 업무계획'을 내 놓은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규제를 완화하며, 소비자 권익 증진 및 경쟁법 집행의 국제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규제법률입니다. 따라서,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하여 독점적 시장구조나 불공정한 경쟁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경제위기를 핑계로 경제력 집중을 도모하거나 반시장적 행위를 합리화시키고자 할 유인이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경쟁법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행정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하는 경쟁당국으로서는 이러한 국가경제 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은 현실 경제상황을 상당부분 반영하여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계획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올 한 해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

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가격담합에 대한 집중 감시가 예상됩니다. 올해 초이미 교복값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사가 착수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교육, 자동차, 이동통신, 석유, 의료분야가 5개 중점감시업종으로 선정되었고, 은행수수료와 보험료, 영화관람료, LPG 및 유류 등 분야에서의 담합을 적발해 내기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8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80건의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 53건의 담합에 대해 1,7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에는 형사고발도 5건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는 향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점 업무로 자리할 것입니다.

둘째, 불법다단계·상조업·대부업 등 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와 가맹사업과 같이 생계형 소자본 창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감시가 예상됩니다. 불법다단계·상조업·대부업과 가맹사업은 경제사정의 악화 및 실업률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분야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이 -2%로 떨어지면 일자리는 18만개가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MF의 전망치(-3.7%)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추락한다면 일자리는 거의 40만개 이상 사라지는 셈입니다.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공식적인 실업자 수는 78만 명에이르러 곧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공식실업자를 말하는 것이고, 실질실업자는 200만 명이 넘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서민들은 고수익을 보장하는 불법다단계에 현혹되거나, 소자본 창업을 위해 가맹사업과 대출 등에 관심을 둘 것이고, 그에 따라 악덕 사업자에 의한 서민 피해가 증가할 개연성 또한 높습니다. 최근 상조업체의 불공정약관이나 부도·폐업 후 잠적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셋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와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등 유통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가 예상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대기업 등 거래 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는 그 비용을 열위의 사업자에게 전가하고픈 유인이 생기 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부당한 단가인하, 기술탈취, 대물변제와 같 은 불공정행위가, 그리고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에서는 부당반품이나 판촉비용전가행위 등 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최근까지 76개 대기업과 약 27,000개의 협력업체 사이에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계속적으로 협약의 이행여부 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규제는 당분간 완화되는 추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M&A에 있어서 기업결합심사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지난해 이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상향 조정되었는데, 올해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및 PEF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각 경제주체 모두가 합심하여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경제주체에게 부당한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진정한 경제위기 극복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은 어떠한 경제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유용한 덕목입니다. Is Horizon

(열려라 중국)

중국 증치세조례 수정



원성철 중국변호사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에 대폭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증치세조례」(아래 '증치세조례')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1994년부터 실시한 증치세조례에 대하여 15년 만에 이루어진 수정이며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가. 중국의 세금구조에 대한 이해

본 증치세 개혁의 의의를 파악하려면 우선 중국의 세금구조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세금구조는 증치세 주도형 구조입니다. 증치세는 생산과 유통 절차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간접세(증치세, 영업세, 관세 등 포함)이므로 개인소득세, 기업소득세, 계약세 등 직접세와 구분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간접세 징수는 총 세금 징수액의 60%이상을 차지하며 그 중 증치세가 약 45%를 차지하므로 전체 세금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편입니다.

나. 증치세조례의 주요 수정내용

중국은 회사를 일반납세자와 소규모 납세자로 구분하여 증치세를 징수합니다. 일반납세자는 매입세금을 매출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증치세를 산정하고, 소규모납세자는 매입세금을 매출세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판매액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증치세를 산정합니다. 이번 수정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일반납세자로 하여금 고정자산의 매입세금을 매출세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소규모납세자의 세율을 6%와 4%에서 3%로 낮춘 것입니다.

수정 전의 증치세조례는 고정자산의 매입세금을 매출세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생산성 증치세 제도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회사가 구입한 신규설비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시설 투자에 큰 세금부담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증치세조례를 실시함에 따라 회사가 고정자산의 매입세금을 매출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신규설비를 구입하는 단가를 줄여 주었으므로 회사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주고, 투자 적극성을 높이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내수시장을 확장시키고, 기 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중국 경제구조의 향상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정 전의 증치세조례는 소규모납세자의 세율을 6%로 정하였으며, 1998년부터 소규모납세자를 공업류와 상업류로 구분하여 각각 6%와 4%의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새로 수정한 증치세조례는 회사를 공업류와 상업류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3%의 세율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정으로 소규모납세자로 되어있는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이 대폭 감소된편입니다. 이는 매입세금을 매출세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소규모 납세자와 일반납세자의세금부담에 평형을 이루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고무하여 중국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정한 증치세조례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기술혁신과 무관하며 개인 소비품과 혼동되는 회사자체용 소비품(소형 승용차, 요트 등)을 매입세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세무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무경험에 따라 원래 세무국이지정한 납세기간 만료 후 10일이었던 세무신고 기간을 15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 증치세 조례 수정의 효과

중국정부는 증치세조례 수정을 통하여 매입세금을 매출세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소규모 납세자의 세율을 3%로 낮추는 감세 정책으로 2009년에 기업의 세금부담을 약1200억 위 엔 경감시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사상 가장 큰 감세정책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으며,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는 현재에 중국기업의 위기 극복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Is Horizon

(생생 러시아)

러시아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개괄적 검토(2)



최수진 변호사

3. 중재법원

가. 서언

우리가 국내에서 접하는 뉴스를 보면, 러시아 중재법원은 부패와 무능함이 배어있는 듯이 보입니다. '중재법원에서 승소하려면 승소 금액의 10%를 뇌물로 받쳐야 한다', '중재법원 의 해결율은 40%에 불과하다', '중재법원은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다' 등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실제로 러시아 중재법원이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재재판의 기본절차를 알아둠으로써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분쟁에 슬기롭게 대처해 가는 기반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나. 재판의 대상

중재법원의 사물관할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 상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했을 때 소송을 하게 된다면, 사물관할이 중재법원이 될 가능성이 거의 전부라고 해 도 맞을 듯 합니다. 단 노동분쟁은 관할 범위가 아니라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팬토바코인터내셔널(JTI)'의 러시아 자회사는 2004년 중재법원에 부가가치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를 제기하여 감액 판결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은행 '알파은행'은

2005년 중재법원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석유회사 '유코스'는 2006년 중재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다. 소송비용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따라 산정기준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소가의 5%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외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 수임료가들게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국내 변호사 수임료와 비교해 볼때 1.5~2.5배 정도를 예상하면 됩니다. 그 외에 증거신청 방법에 따라, 감정료, 증인여비, 통역비 등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 당사자가 부담하는게 원칙이므로, 승소하게 되면 패소 당사자로부터 인지대 및 변호사 수임료 등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수임료는 전액이 아니라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만 패소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소송진행 절차

소송 절차는 국내 재판절차와 매우 유사합니다. 원고가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한 소장을 접수하면 소송 절차가 개시됩니다. 소송 첫 단계로서 쟁점 및 증거방법을 정리하는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된 후, 당사자가 변론을 진행하는 변론절차, 법원이 최종판단을 내리는 판결절차 순서로 진행됩니다.

만약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의 주장이 논쟁의 여지없이 명확하거나 소송액수가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간이심리절차로 진행됩니다. 간이심리절차는 단독판사가 서면과 증거자료만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1개월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도 불복하는 당사자는 2개월 이내에 상고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 상소기한을 도과한 후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6개월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 보전 처분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중간에 재산을 모두 처분해 버린다면, 소송을 하는 실익이 없게 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러시아에서도 보전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보전처분을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와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허용됩니다. 그 형태로는 국내법상 가압류 및

가처분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전처분은 중재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JS Horizon]

(Vietnam LIVE!)

베트남 현지기업의 파산절차에 대한 소고



김주현 변호사 • JS Horizon Vietnam Hanoi 지사장

지난 호 기업해산절차를 살펴본 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베트남현지기업의 파산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파산법에 의하면 파산절차는 기업에 파산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정한 파산신청자에 의한 파산절차개시신청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파산절차개시결정을 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법원의 파산절차개시결정 후 법원의 결정에 의해 기업경영회생절차 또는 자산 및 부채의 환가절차 중 하나로 진행이 되고, 기업경영회생절차 진행 중 기업경영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가절차로 이행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환가절차가 종결되고 나면 법원에 의한 기업파산 선언결정에 의해 파산절차가 종결되게됩니다.

기업경영회생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호에는 파산신 청 및 환가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파산절차개시신청

파산절차개시신청(이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자(이하 파산신청자)는 무담보채권자, 피고용인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 피고용인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 파산 기업의 법적 대표, 주식회사의 주주 등이 있습니다.

기업의 파산신청은 상급 법원에 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용자가 파산

신청자인 경우에는 파산비용 예납의무가 없습니다.

2. 파산신청의 접수

법원은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 파산비용예납영수증을 제출한 날부터 재판부는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예납이 필요 없는 경우 파산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접수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접수고지서를 신청자에게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에 파산신청자가 기업의 법적 대표가 아닌 경우, 파산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안에 기업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파산기업이 제3자의 보증인인 경우, 파산기업은 위 통지를 받은 후 5일 안에 그 이해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파산신청자가 파산비용을 예납을 하지 않은 경우, 파산신청자가 파산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파산신청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파산절차개시결정

법원은 파산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파산절차개시 또는 불개시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파산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안에 검사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지역신문 및 중앙신문에 3회 연속 게재 그 사실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고, 파산 채권자와 파산기업의 채무자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이 파산절차개시결정을 하게 된 후에는 자산관리 및 환가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관리위원회는 파산사건 관할법원과 동급법원의 강제집행법원의 집달관, 법원사무관, 채권자 대표, 법인의 법적 대표, 필요시 노동조합 대표, 피고용인 대 표 또는 전문기관의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집달관이 의장을 맡게 됩니다.

법원의 파산절차개시결정 후에도 파산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은 법원 및 위원회의 감독 및 감시하에 평상시처럼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원이 파산절차불개시결정을 한 경우, 파산신청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자산보전을 위한 조치

법원이 파산절차개시신청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제3자에의 기부행위, 상대방에 비해 부담이 명백히 큰 쌍무계약의 체결,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의 변제, 채무에 대한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기타 기업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모든 거래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또 자산보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재판부는, 부패하기 쉬운 물품, 사용기간이 가까워진 물품, 적절한 시기가 아니면 매각이 어려운 물품 등의 매각 등의 임시긴급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파산기업의 자산

파산채권의 변제에 충당되는 파산기업자산은 법원이 파산심리결정을 한 시기에 가지고 있었던 자산 또는 자산에 대한 권리, 파산신청 접수 전에 이루어진 거래의 이행에 따라 갖게 될 이익, 자산 또는 자산에 대한 권리, 보증에 제공된 자산, 담보채권자에게 변제된 후 잔여자산, 토지법에 따라 결정된 파산기업의 토지사용권의 가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파산채권자는 기한 내에 법원에 채무변제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채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파산채권자가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 주됩니다.

파산기업의 자산으로 파산기업의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때는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 1. 파산비용
- 2. 미지불 임금, 퇴직수당, 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기타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상 의 다른 권리
- 3. 무담보채권자에 대하여 자산이 변제충당에 부족할 경우 각 채권자는 채권의 비율 에 따라 변제

6. 채권자 집회

재판부는 채권자리스트가 작성이 끝난 후 30일 안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열어야 합니다.

채권자집회에는 채권자리스트 상의 채권자(서면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 참석도 가능), 피고용자 대표와 노조대표(채권자와 동일한 지위 인정), 기업을 위해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 (무담보채권자와 동일한 지위 인정) 등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을 한 파산기업의 대표자, 주식회사의 주주 등은 의무적으로 집회에 참석하여야 하며(참석불능시 서면위임에 의한 대리인 선임가능), 파산기업의 법적 대표자가 없는 경우, 재판부는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은 적어도 집회 당시 현존하는 무담보채권 총가치의 2/3를 대표하는 무담보채권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결은 모든 채권자들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7. 환가절차 개시결정

파산채권자, 피고용인 대표 또는 노동조합대표가 파산신청을 하고, 파산기업의 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채권자집회가 1회 연기된 후 집회에 불참한 경우, 파산기업의 대표 또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파산신청을 하고 채권자집회가 1회 연기된 후 집회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등으로 채권자집회가 실패했을 경우 재판부는 환가절차 개시 결정을 합니다.

기업이 더 이상 분배를 위한 잔여자산이 없는 경우 또는 분배계획이 모두 실행된 경우 환가절차는 중지됩니다.

8. 기업파산 선언

재판부는 환가절차 중지결정 선고와 동시에 기업파산을 선언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파산비용예납기간 경과 후 30일 안에 파산신청을 한 기업소유자 또는 대표가 예납을 할 만한 돈이 없거나 다른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파산개시신청을 접수한 한 후 또는 관련당사자들로부터 자료 및 서류를 넘겨 받은 후, 기업이 파산비용을 지급할 만한 어떠한 자산도 없거나 자산이 부족한 경우 재판부는 기업파산을 선언하는 결정을 하여야합니다.

이의가 없는 경우, 기업파산 선언 결정은 이의제기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이로써 모든 파산절차를 종결되게 됩니다. Is Horizon

(주목! 이 판례)

소위 '알박기' 행위와 부당이득죄

- 대상판결: 대법원 2009년 1월 15일 선고 2008도8577 판결

- 사건명: 부당이득

1. 서설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와 자신 소유의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최대한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 중 소위 '알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알박기'라는 단어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립국어원의 누리집에 의하면 '알박기'는 '주요한 택지의 일부를 남보다 앞서서사 두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통상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금융비용의 절감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로인해 상당히 거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서라도 일단 사업부지 내의 토지를 매입합니다.

시행자가 필요한 행정상의 인허가를 취득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에 착수한 이후에 소위 '알박기'를 한 토지매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알박기'에 관한 형사 고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정은 형법 제 349조(부당이득)입니다.

2. 부당이득죄의 구성요건(성립요건)

형법 제349조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당이득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죄의 구성요건(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u>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u>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부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u>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간의 관계, 피해자가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존재 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 1246 판결 등 참조).</u>

그러나 동시에 대법원은 "특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대전제를 고려하여 소위 '알박기' 행위에 부당이득죄를 적용함에 있어 매우 신중한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감정과 달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 여부'를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을 기준으로 해서만 판단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1년 4월 무렵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5년간 거주하였고, 인근으로 이사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관리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회사(사업시행자)는 2005년 1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는 사업부지에서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몇 건의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월 6억원 정도의 금융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도하라는 피해자 회사의 제안을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 <u>인근의 다른 토지들에 비해 40배가 넘는 가격</u>으로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의 부당이득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2)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에게 현저하게 부당한 가격으로 매도한 점, 이 사건 주택건축사업의 지연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거액의 금융비용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사이의 매매교섭 당시 이 사건 주택건축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되어 피해자 회사로서

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9. 10. 선고 2008노219 판결).

4. 대법원의 판단과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먼저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사업부지 중 일부의 매매와 관련된 이른바 '알박기' 사건에서 부당이득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앞서 본바와 같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이어 대법원은 '알박기'로 인한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u>"피해자의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그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이거나 "피해자에게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한 후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u> 등과 같이 <u>"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u>에 이르러야한다고 판시한 다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기오래 전부터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소유하여 온 피고인이 이를 매도하라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부하다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큰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함부로부당이득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행위에 관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택건축사업이 추진되기 오래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여 오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라는 피해자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다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큰 이득을 취하였을뿐, 달리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다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이득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매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에야 비로소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은 대법원이 '알박기' 행위에 부당이득죄를 적용함에 있어 더욱 엄격해지고 신중해진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09년 1월 15일 선고 2008도8577 판결 Is Horizon

(최신 법령)

1. 증권거래법 일부 규정, 상법에 편입

: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936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됨에 따라 「증권거래법」이 폐지되었습니다.「증권거래법」이 폐지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주주총회 소집 공고, 소수주주권,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사외이사의 선임 등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규정을 상법 회사편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운로드: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9362호)

2. 자통법 제정 이후,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개정사항 반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940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7. 8. 3. 공포된 후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통합 대상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래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의 제공행위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설명의무 위반의 유형에 포함하고, 금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 간의 장외파생상품 매매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에 한정하는 등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9407호)

3.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

: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9374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의 고도 기술수반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대규모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것으로기대됩니다.

다운로드 :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9374호)

(지평지성 소식 ①)

법무법인 지평지성, 베트남 현지법인 하노이 사무소 설립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1월 13일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설립인가를 받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평지성은 2007년 9월에 호치민시티에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한 바 있으며, 이번 하노이 사무소 설립으로 베트남에서 두 개의 사무소를 가지고 전국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노이 지사장을 맡은 지평지성 김주현 변호사는 베트남에서 4년 넘게 활동해 온 베트남 전문가이며, 현재 베트남 현지 변호사 2명, 스탭 4명과 함께 하노이 사무소를 운영중입니다.

최근 국제적인 경제불황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여전히 건설·부동산 및 금융, 증권, 유통, 제조 등 한국의 주요 투자처 및 수출시장으로서 지평지성은 하노이 사무소 설립으로 하노이를 비롯한 베트남 북부지역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주현 하노이 지사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베트남내 사업을 하고 있거나 새롭게 진출하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효율적이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해외투자에서 직면하게 되는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재 지평지성은 해외사무소로 중국 상해 사무소와 베트남 호치민시티 현지법인, 하노이 사무소를 운영중입니다.

[관련기사]

- 법률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 베트남 하노이에 지사 설립
- 연합인포맥스 법무법인 지평지성, 베트남 하노이 지사 설립
- <u>아시아투데이 [김주현 변호사 인터뷰]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투자·청산 동시</u>에 늘듯"



김주현 변호사 · 하노이 지사장, 아시아투데이 인터뷰 (2009.01)

(지평지성 소식 ②)

지평지성, 현대종합상사 매각 관련 법률자문사로 선정

지난 2월 2일, 현대종합상사 매각 주간사에 우리투자증권과 산업은행M&A실 컨소시엄, NH투자증권이 공동 선정되었다고 발표되었으며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본 매각 건 관련 법률자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그동안 진로 인수, 대우조선해양 인수, 쌍용건설 인수, C&M 인수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 쌓은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아 본 매각 건에 관한 법률자문사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벨웨이브 매각 자문을 비롯하여 본건에 이르기까지 계속 M&A 분야에서 발군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매일경제 현대종합상사 매각주간사 선정
- 한국경제 현대종합상사 매각주간사에 우리證·산은컨·NH證

[담당 변호사]



강성 대표변호사



황호동 변호사



명한석 변호사



설동근 변호사



김남연 변호사



김재영 변호사

(지평지성 소식 ③)

지평지성, 모스크바 투자진흥청과 MOU 체결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12월 19일, 모스크바 상공회의소 (회장: 가라보프 레오니드 블라지미로비치) 산하 모스크바 투자수출진흥청(MIEPA, Moscow Investment & Export Promotion Agency) 바르다냔 수렌 아가네쏘비치 대표와 '법률자문 및 투자유치에 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지평지성과 MOU를 체결한 MIEPA(Moscow Investment & Export Promotion Agency, 모스크바 투자수출 촉진청)는 모스크바 상공회의소가 설립한 외국인 투자 및 해외사업 지원 등을 위해 설립한 공적 회사입니다.

이번 MOU는 양측의 상호 사법권 내에서 Cross-border 투자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법적자문 제공과 해외 투자파트너 소개 및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양측은 상호간의 상업적, 법률적 규제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교환 및 공동프로젝트 수행을위한 실무팀 구성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모스크바 공식기관을 통해 현지 투자에 대한 지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및 러시아 기업에 대해 보다 빠르고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기사]

- <u>법률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 모스크바 투자진흥청과 MOU 체결</u>
- 아시아투데이 지평지성, 모스크바 상공회의소와 MOU 체결

[지평지성 러시아·중앙아시아팀 변호사 및 전문가]



조용환 대표 변호사



명한석 변호사



황승화 변호사



정철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길영민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최수진 변호사



마명원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구상수 회계사

(지평지성 소식 ④)

지평지성, 진도에프앤 매각 자문업무 수행

지난 2월 2일, 35년 전통 패션업체 진도에프앤의 새로운 최대주주로 임오파트너스가 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본 건과 관련하여 매수자인 임오파트너스를 대리하여 계약체결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매일경제 - 진도에프앤, 부동산 개발회사가 45억에 인수

[담당변호사]



명한석 변호사



정철 변호사

(지평지성 소식 ⑤)

지평지성, 대주세무법인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2월 6일, 지평지성 강남사무소 회의실에서 대주세무법인과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주세무법인(www.djtax.co.kr)은 주로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들로 구성된 세무법인 업계 1-2위의 대형 세무법인으로서, 이번 업무협약은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대주세무법인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상호간의 세무문제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대주 세무법인과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조세팀이 결합하여, 국세청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국세심판, 조세소송, 조세형사 및 국제조사 등 조세에 관한 모든 영역에서 고객들에게 전문화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대주세무법인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조세문제에 관하여 모든 영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 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대주세무법인 업무협약 조인식 (2009.02.06)

(지평지성 소식 ⑥)

지평지성, 강북 본사를 중심으로 사무실 재배치 및 이전 완료

지평지성은 2월 8일 본사가 있는 강북 상공회의소 빌딩 및 바로 옆 건물인 HBSC 빌딩을 중심으로 회사파트, 금융파트, 소송파트 소속의 변호사들이 모두 모여 사무실 재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변호사들이 강북과 강남에 분리되어 있어 일부 고객들께서 느끼시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회사, 금융, 소송 파트별로 (구) 법무법인 지평과 (구) 법무법인 지성의 변호사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인 서울 상공회의소 빌딩 11층에는 회사파트와 소송파트, 7층에는 지적재산권 및 정보통신팀(IP/IT팀) 및 해상팀, 강북 분사무소인 HSBC 빌딩 15층에는 금융파트가 배치되었고, 강남 분사무소인 역삼동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에는 조세팀과 부동산팀을 중심으로 10여명의 변호사들이 당분간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지평지성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물 안내]



왼편 강북사무소 HSBC 빌딩과 오른편 본사 상공회의소 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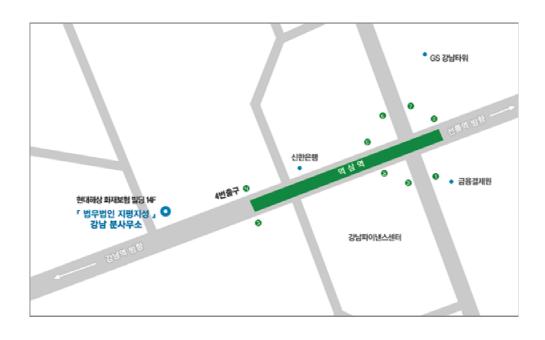
강남 분사무소 현대해상화재보험 빌딩

[오시는 길 · 약도]

■ 본사 및 강북 분사무소



■강남 분사무소



(영입인사 ①)



홍진경 미국변호사 jhong@js-horizon. com

□ 학력사항

- University of Virginia, Charlottesville, Virginia (B.A. in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2000)
-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Minneapolis, Minnesota (J.D. 2004)

□ 경력사항

- 뉴저지주 변호사 (2005)
- 뉴욕주 변호사 (2008)
- Eilenberg Krause & Paul LLP, New York, New York
- Giordano, Halleran & Ciesla, P.C., Middletown, New Jersey
- Beattie Padovano, LLC, Montvale, New Jersey
-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n the trial of Slobodan Milosevic, The Hague, Netherlands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번 지평지성의 금융파트에 입사한 홍진 경 미국 뉴욕 및 뉴저지주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평지성에 입사하기 전 미국로펌에서 주로 M&A, 기업자문, 상장법인 관련 자문, 금융, 각종 영문계약 작 성 및 검토 등의 분야에 대한 법률자문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주식 및 각종 증권의 공모 또는 사모 발행, 증권시장에서의 기업공개 및 상장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사업설명서 작성, 관련 법령 및 규제에 관한 법률자문업무가 주요경력 중 하나입니다. 또한 NASDAQ 및 New York Stock Exchange에 상장된 여러 회사에 대하여 해당 유가증권시장의 증권감독기구에 대한 신고서류 제출 관련 자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평지성의 여러 유능하신 변호 사님들과 함께 고객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S Horizon

(영입인사 ②)



Nguyen Thi Thoa 베트남 변호사 thoa@js-horizon.c om

□ 학력사항

- 하노이 외국어대 졸(영어전공)
- 하노이 경제대학교 회계과정 수료
- 하노이 법대 졸

□ 경력사항

- Kona Co., Ltd(Chief Accountant)
- CB Richard Ellis Co., Ltd(Sales Executive)
- Dae Han Viet Nam Co., Ltd(Chief Accountant)
- Vision & Associates Co., Ltd(Investment & Management Consultants)
- 골든브릿지 베트남법인(Chief Accountant, Legal assistant, Project manager)
- VKONE PARTNERS Co., Ltd. Consulting Manager 겸 베트남 변호사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베트남 하노이사무소 베트 남변호사

□ 인사말

I have pleasure in being a member of JS HORIZON VIETNAM LAW FIRM, and working together with other members.

By measurable qualifications and knowledge in financing, banking, accounting, enterprise managing, investment consulting, etc... which were obtained by me from education, experience. I would like to work well as a Vietnamese lawyer in enterprise and investment consulting with related fields such as taxation, finance, banking,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labor, accounting, etc.

I hope to engage with the firm for long time to devote and develop all of my professional ability for business of our firm because of interest of our clients, the law firm and ourselves.

I wish growth, prosperity more and more for our law firm, as well as a close co-operation, co-ordination and mutual assistance of members in working.

(영입인사 ③)



Nguyen Trong Hiep 베트남 변호 사 hiep@js-horizon.c om

□ 학력사항

• 하노이 법대 졸

□ 경력사항

- Anh Consultant Co., Ltd.
- Dao & Brothers' Lawyer & consultant
- VKONE PARTNERS Co., Ltd 구성원 변호사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베트 남변호사

□ 인사말

I am happy and pleased to become a member of JS HORIZON VIETNAM LAW FIRM, and working together, exchanging experience as well as share advantages, difficulties with other member.

By more than five experienced years in criminal civil proceedings, enterprises consulting, contract consulting, investment consulting... I would like to work well as a Vietnamese lawyer in enterprise, investment and contract consulting, immovable, commercial matters and to take part in criminal and civil cases.

In Horizon Vietnam Law Firm with a dynamic, effective and expertise environment, I have a certain belief that my academic knowledge and practical experience will be brought into play. It is my actually honor to contribute as well as devote and develop JS Horizon Vietnam Law Firm. I would like to use up my spirit, my effort, potential to work and strengthen development of JS Horizon Vietnam Law Firm.

I would like to have a tight co-operation, effective assistance of other members, departments of Law Firm to accomplish my task in the best way. By the last words, I want to send best regard to all of members and stainable, prospective development to our Law Firm.



http://www.js-horizon.com

법무법인 지평지성

주사무소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11층 Tel: 02)6050-1600 Fax: 02)6050-1700

강남분사무소 (135-911)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6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 14층 Tel∶02)2009-7500 Fax∶02)2009-7520

강북분사무소 (100-161)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25 HSBC빌딩 15층 Tel : 02)6230-7400 Fax : 02)6230-7610

상해 사무소 Room 3305,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 86-21-5208-2807

호치민 사무소 #2205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910-7510 Fax: 84-8-910-7511